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1047호(號) 1930년(昭和 5) 7월 1일 화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291호(號)

1930(昭和 5)년 조선총독부고시 제74호(號)(조선국유철도 화물운송규칙[朝鮮國有鐵道貨物運送規則]) 중(中) 1930(昭和 5)년 7월 1일부터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1930(昭和 5)년 7월 1일 조선총독(朝鮮總督) 자작(子爵) 사이토 마코토(齋藤實)

별표(別表) 화물할인임률표(貨物割引賃率表) 국선(局線) 내(內) 발착(發著) 의 부문[部] 중(中) 목재(木材: 10급[級]의 것)。상판(箱板: 가공[加工]하여 조립[組立]한 것을 포함[包含]함)의 항(項)을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품 목(品目)	발 역(發驛)	착 역(著驛)	급종별(扱種別)	임 률(賃率)	기 사(記事)
목재(木材: 10급[級]의 것。갱목[坑木]을 제[除]함) 상판(箱板: 가공[加工]하여 조립[組立]한 것을 포함[包含]함)	신의주(新義州), 단동(安東), 신의주하급소(新義州荷扱所), 함흥(咸興), 부령(富寧), 고무산(古茂山), 회령(會寧)	국선(局線) 및 연대선(連帶線)	차급(車扱)	500km(粁)까지 1할(割)5푼(分) 감(減) 501km(粁) 이상(以上) 2할(割) 감(減)	1. 목화물(木貨物)은 별도(別途)로 정(定)한 톤수(噸數)에 의(依)하여 취급(取扱)을 함으로 함 2. 본(本) 운임(運賃)은 지정운송취급인규칙(指定運送取扱人規則) 제10조(條)제4호(號) 적용(適用) 상(上) 보통운임(普通運賃)으로 간주(看做)함
	신의주(新義州), 단동(安東), 신의주하급소(新義州荷扱所), 부령(富寧), 고무산(古茂山), 회령(會寧)	부산(釜山), 초량(草梁)	동(同)	3할(割)5푼(分) 감(減)	
	동(同)	인천(仁川), 원산(元山)	동(同)	2할(割)5푼(分) 감(減)	
	동(同)	진 남 포(鎭南浦)	동(同)	2할(割) 감(減)	
	동(同)	목포(木浦), 군산(群山)	동(同)	3할(割) 감(減)	
	함 흥(咸興)	부산(釜山), 초량(草梁)	동(同)	3할(割) 감(減)	
	동(同)	인 천(仁川)	동(同)	2할(割) 감(減)	
	동(同)	목포(木浦), 군산(群山)	동(同)	2할(割)5푼(分) 감(減)	